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정부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9급 2명), 통계청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통계청 소속기관인 지방통계청의 정원 12명(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1명), 병무청의 정원 2명(9급 2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의 정원 14명(6급 2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 및 병무청 소속기관인 병무민원상담소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농촌진흥청의 정원 3명(5급 1명, 지도사 1명, 9급 1명)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의 정원 5명(연구관 2명, 연구사 2명, 9급 1명)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의 정원 3명(연구사 3명), 새만금개발청의 정원 1명(5급 1명),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인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1명(7급 1명),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정원 1명(6급 1명),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지방우정청의 정원 61명(5급 1명, 6급 4명, 7급 21명, 8급 27명, 9급 8명), 무역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정원 1명(8급 1명),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사무처의 정원 1명(6급 1명), 국무조정실의 정원 2명(5급 2명)과 국무조정실의 소속기관인 국제개발협력본부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00. ~ 1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674”를 “668”로 하고, 일반직 계 “666”을 “660”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44”를 “638”로 한다.

제2조(「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693”을 “687”로 하고, 일반직 계 “692”를 “68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82”를 “676”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434”를 “1,422”로 하고, 일반직 계 “1,434”를 “1,42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430”을 “1,418”로 한다.

제3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296”을 “294”로 하고, 일반직 계 “292”를 “29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85”를 “283”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641”을 “1,625”로 하고, 일반직 계 “1,641”을 “1,62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630”을 “1,614”로 한다.

제4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341”을 “338”로 하고, 일반직 계 “340”을 “33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29”를 “32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900”을 “892”로 하고, 일반직 계 “900”을 “89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82”를 “874”로 한다.

제5조(「새만금개발청 직제」의 개정)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36”을 “135”로 하고, 일반직 계 “135”를 “13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31”을 “130”으로 한다.

제6조(「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483”을 “479”로 하고, 일반직 계 “480”을 “47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60”을 “456”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65”를 “164”로 하고, 일반직 계 “165”를 “164”로 하며, 4급 이하 “164”를 “163”으로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67”을 “16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64”를 “16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7”을 “156”으로 한다.

제8조(「우정사업본부 직제」의 개정)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33,143”을 “33,082”로 하고, 일반직 계 “33,143”을 “33,08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3,119”를 “33,058”로 한다.

제9조(「무역위원회직제」의 개정)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44”를 “43”으로 하고, 일반직 계 “44”를 “43”으로 하며, 4급 이하 “37”을 “36”으로 한다.

제10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의 개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69”를 “68”로 하고, 일반직 계 “68”을 “6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5”를 “64”로 한다.

제11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의 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81”을 “80”로 하고, 일반직 계 “78”을 “7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5”를 “74”로 한다.

제12조(「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93”을 “291”로 하고, 일반직 계 “290”을 “288”로 하며, 출입국관리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

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34”를 “32”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93”을 “291”로 하고, 일반직 계 “290”을 “288”로 하며, 출입국관리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33”을 “31”로 한다.

별표 2의4 중 총계 “29”를 “28”로 하고, 일반직 계 “29”를 “28”로 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5”를 “1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방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계청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통계청 소속기관의 정원 12명(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의 정원 2명(9급 2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의 정원 3명(5급 1명, 지도사 1명, 9급 1명)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 8명(연구관 2명, 연구사 5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새만금개발청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새만금개발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

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우정사업본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정원 61명(5급 1명, 6급 4명, 7급 21명, 8급 27명, 9급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무역위원회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무역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정원 1명(8급 1명)

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무조정실의 정원 2명(5급 2명)과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2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 계	<u>674</u>	<u>668</u>	-6
·	·	·	
·	·	·	
일반직 계	<u>666</u>	<u>660</u>	-6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44</u>	<u>638</u>	-6
·	·	·	

[별표 3]

통계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434</u>	<u>1,422</u>	-12
일반직 계	<u>1,434</u>	<u>1,422</u>	-1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430</u>	<u>1,418</u>	-12

[별표 4]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41</u>	<u>1,625</u>	-16
일반직 계	<u>1,641</u>	<u>1,625</u>	-16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630</u>	<u>1,614</u>	-16

[별표 2]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00</u>	<u>892</u>	-8
일반직 계	<u>900</u>	<u>892</u>	-8
·	·	·	
3급 또는 4급 이하	<u>882</u>	<u>874</u>	-8
·	·	·	

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새만금개발청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36</u>	<u>135</u>	-1
•	•	•	
•	•	•	
일반직 계	<u>135</u>	<u>134</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31</u>	<u>130</u>	-1

[별표 3]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5</u>	<u>164</u>	-1
일반직 계	<u>165</u>	<u>164</u>	-1
·	·	·	
4급 이하	<u>164</u>	<u>163</u>	-1

무역위원회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무역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4</u>	<u>43</u>	-1
일반직 계	<u>44</u>	<u>43</u>	-1
·	·	·	
·	·	·	
4급 이하	<u>37</u>	<u>36</u>	-1
·	·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무조정실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93</u>	<u>291</u>	-2
·	·	·	
·	·	·	
일반직 계	<u>290</u>	<u>288</u>	-2
·	·	·	
·	·	·	
출입국관리사무관·행정사 무관·사회복지사무관· 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 ·임업사무관·해양수산 사무관·보건사무관·식 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 관·항공사무관·시설사 무관·방재안전사무관· 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 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34</u>	<u>32</u>	-2
·	·	·	
·	·	·	

[별표 1의2]

국무조정실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93</u>	<u>291</u>	-2
·	·	·	
·	·	·	
일반직 계	<u>290</u>	<u>288</u>	-2
·	·	·	
·	·	·	
출입국관리사무관 · 행정사 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해양수산 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 품위생사무관 · 환경사무 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 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 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33</u>	<u>31</u>	-2
·	·	·	
·	·	·	

[별표 2의4]

국제개발협력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6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9</u>	<u>28</u>	-1
일반직 계	<u>29</u>	<u>28</u>	-1
·	·	·	
·	·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5</u>	<u>14</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9